

꿈이름 외화자유적금 특약

제 1 조 (적용범위)

“꿈이름 외화자유적금(이하 ‘이 적금’이라 함)”거래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‘외환거래 기본약관’, ‘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’, ‘예금거래기본약관’ 및 ‘계좌간 자동이체 기본약관’을 적용합니다.

제 2 조 (가입대상)

이 적금의 가입대상은 만 18 세 이하 국민인 거주자로 실명의 개인으로 하며, 1 인 1 계좌만 개설 가능합니다.

제 3 조 (예금과목 및 계약기간)

이 적금의 과목은 외화적금으로 하며, 계약기간은 1 년제로 합니다.

제 4 조 (저축금액 및 저축한도)

이 적금의 저축금액은 매 회차 미화 1 불 이상이며, 최대 미화 1 만불까지 적립할 수 있습니다.
(계좌의 잔액이 미화 1 만불을 초과한 경우는 추가 적립은 불가하며, 재예치만 가능합니다.)

제 5 조 (가입가능 통화)

이 예금의 가입가능 통화는 미국달러화 (USD) 로 합니다.

제 6 조 (적립방법)

이 적금은 계약기간 동안 제 4 조(저축금액 및 저축한도)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습니다.

제 7 조 (이율 적용 방식)

- ① 이 적금은 신규가입일 또는 재예치일 현재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외화 정기적금 (12 개월) 이율을 기본이율로 적용합니다.
- ② 이 적금은 적립금마다 입금일로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본 조 제①항에서 정한 기본이율에 제 8 조의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우대 이율을 더하여 만기에 일시지급합니다.

제 8 조 (우대이율)

- ① 당행거래 우대이율 : 이 적금 최초 신규 가입시점에 꿈이름적금을 보유한 고객에 대해 계약기간 종료일에 연 0.1%의 우대이율을 제공합니다. (최초 1 회에만 제공되며 재예치 시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)
- ② 재예치 우대이율 : 이 적금을 재예치하는 경우 재예치된 적금에 대해 매 계약기간 종료일에 연 0.1%의 우대이율을 제공합니다.
- ③ 자동이체 우대이율 : 부산은행의 원화계좌에서 자동이체로 계약기간의 2/3 (8 회차) 이상 저축한 만기 해지 계좌에 대해 매 계약기간 종료일에 연 0.2%의 우대이율을 제공합니다.

- ④ 이 적금을 중도해지 또는 특별중도해지 하는 경우 본 조 ①항, ②항 및 ③항의 우대이율은 제공되지 않으며, 중도해지 시 제 11 조, 특별중도해지 시 제 12 조에 정한 이율이 적용됩니다.

제 9 조 (재예치)

- ① 이 적금의 가입 시 또는 만기일 전에 고객이 재예치를 신청하는 경우, 은행은 재예치 시점에 관련 세금을 제외한 원금과 이자의 합계금액을 이 적금의 1 회차 불입금으로 하여, 제 3 조에서 정한 계약기간 1 년제의 자유적금으로 재예치 처리합니다.
- ② 다음의 경우 재예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㉠ 재예치 시점에 잔액이 미화 1 천불 이하인 계좌로 재예치 이후 추가저축이 없었던 계좌
 - ㉡ 재예치 시점에 예금주가 제 2 조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계좌
 - ㉢ 재예치 시점에 압류, 사고신고, 제 3 자 질권설정 등 법적 지급제한이 발생한 계좌
- ③ 재예치된 계좌는 재예치일로부터 제 7 조 ①, 제 8 조 ②,③의 이율을 적용하며, 본조 ②항에 의해 재예치가 되지 않은 계좌의 만기일로부터 고객의 해지 요청일 전일까지의 이율은 제 13 조의 만기 후 이율을 적용합니다.
- ④ 재예치일은 신규일 또는 직전 재예치일로부터 1 년 해당일(만기일과 동일일)이며,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도 해당일 기준으로 재예치 처리합니다. 또한 해당일 날짜가 없을 경우에는 그 달의 말일로 합니다.
- ⑤ 자동재예치 신청고객이 통지를 요청한 경우 **SMS 로 재예치 됨을 통지**합니다.

제 10 조 (이자지급방법)

이 적금은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만기에 함께 지급합니다. (만기일시지급식)

제 11 조 (중도해지이율)

이 적금의 고객이 만기일전에 계좌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입금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다음의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.

- ① 7 일 미만 : 해지신청일 고시된 외화보통예금 이율
- ② 7 일 이상 1 개월 미만 : 약정 기본이율의 10%
- ③ 1 개월 이상 3 개월 미만 : 약정 기본이율의 30%
- ④ 3 개월 이상 6 개월 미만 : 약정 기본이율의 40%
- ⑤ 6 개월 이상 9 개월 미만 : 약정 기본이율의 50%
- ⑥ 9 개월 이상 1 년 미만 : 약정 기본이율의 80%

제 12 조 (특별 중도해지)

제 11 조에도 불구하고 당행에 거래외국환은행 (02.해외유학생) 지정^{주)} 고객이 이 적금의 중도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신규 가입일 또는 재예치일의 약정 기본이율을 적용하여 중도 해지합니다.

※ 주)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이란 효과적인 외환관리를 위하여 외국환거래규정이 정한 종류의 거래에 대해 고객이 지정한 하나의 특정 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한 제도

제 13 조 (만기 후 이율)

이 적금을 만기일 이후에 해지하는 경우,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만기 후 1년 이내의 기간은 약정 기본이율의 30%를 적용하며, 만기 후 1년이 초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약정 기본이율의 10%를 적용한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.

제 14 조 (자동이체)

- ① 고객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원화예금을 출금계좌로 등록하고, 이 예금으로 자동이체 할 수 있습니다.
- ② 원화출금계좌에서 자동이체시 이체일의 1 회차 고시 전신환매도율(송금 보내실 때)을 기준으로 환율 70% 우대 적용하여 예치됩니다.
- ③ 자동이체 금액을 ‘외화입금액’ 또는 ‘원화지금액’ 기준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④ 해당 이체 등록일이 토요일, 일요일,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은행영업일에 이체됩니다.
- ⑤ 이체일에 출금계좌의 지급자금이 이체금액에 미달하면 다음 이체일 전 은행영업일까지 잔액을 확인하여 부족자금이 채워지는 날에 이체처리 합니다.
- ⑥ 고객이 신청내용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자동이체일의 직전 은행영업일까지 영업점에 신청해야 합니다.

제 15 조 (우대서비스)

- ①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고객이 해지금액 (중도해지포함)을 인출하는 경우 다음의 수수료 감면 적용합니다.
 - ✓ 외화현찰로 인출 시 외화현찰수수료 면제
 - ✓ 해지 당일 해지 금액으로 해외송금 시 해외당발 송금수수료 1회 면제
(단, 웨스턴유니온 해외즉시당발송금은 수수료 면제 불가)
- ② 이 적금의 해지당일에 해지금액을 미화(USD)이외의 통화로 해외송금 시 환율 90% 우대를 적용합니다.

부칙

제 1(시행일) 이 약관은 2024 년 06 월 12 일부터 개정 시행하며, 변경된 약관은 시행일 이후 가입 고객부터 적용됩니다.

※ 이 약관은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부산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